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3 선고 2019가단213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1.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8. 11. 21. 접수 제245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8. 11. 21. 접수 제245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D의 동생으로, C의 처제이고, 피고는 E의 사위이다.

나.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여러 차례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C은 D로부터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2019. 1. 10. ‘12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2120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9.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127,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C의 16,500,000원 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C이 원고에게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20. 5.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이 창원지방법원 2020나5738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9. 16.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8. 확정되었다.

라. C은 2018. 11.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8. 11. 21. 접수 제2454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와 C이 통정하여 체결한 허위의 매매예약이고, 이러한 통정 허위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E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인 피고의 명의로 마쳐진 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바, C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거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피고 명의의 계좌 및 E의 올케인 F 명의의 계좌에서 C에게 2017. 11. 27.부터 2018. 8. 30.까지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C의 채권자 E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E의 사위이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C에게 금전이 송금된 점, 2019. 2. 13.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피고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피고가 불가분적 관계로서 피고도 C으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3자로서 명목상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2.경부터 2018. 10. 4.경까지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C은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1) 적극재산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감정인 G의 각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인 2018. 11. 20.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아래 표 순번 4, 5 각 자동차의 가액은 2021. 11. 3.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자동차의 경우 소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2018. 11. 20.경 적어도 아래 순번 4, 5 기재 각 가액의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순번	내역	가액(원)
1	별지 목록 제1 내지 6 각 부동산	487,516,960
2	별지 목록 제7 부동산	12,420,000
3	별지 목록 제1, 3, 5, 7 기재 각 토지 지상 정자, 발코니, 차고 등	33,938,500
4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자동차	14,300,000
5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	31,000,000
6	H조합 월복리식 정기예탁금	20,000,000
	합계	599,175,460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처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제주시 I 임야 53㎡ 및 C의 아들인 J 명의의 K조합에 대한 예금 13,748,165원도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재산의 소유 명의자가 C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C 소유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C이 운영하던 'L' 식당의 가치, M 및 N의 기업가치와 보유 수산물의 가액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극재산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조합, P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 아래와 같은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내역	금액(원)
1	O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63,838,000
2	P조합에 대한 채무	169,943,846
3	원고에 대한 채무	110,500,000
4	E(또는 피고)에 대한 채무	200,000,000
5	Q에 대한 채무	30,000,000
6	R에 대한 채무	10,000,000
7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0,000,000
8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설정된 S 주식회사에 대한 저당채무	1,000,000
	합계	625,281,846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한 명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피고는, C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2018. 8. 30.경 F 명의의 계좌에서 C에게 자금을 이체한 후 세 달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C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사업에 투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

별지

부동산 목록

1. 통영시 T 대 142㎡

2. 통영시 T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수산물보관창고 84㎡

3. 통영시 U 대 133㎡

4. 통영시 U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창고 및 주택

5. 통영시 V 대 182㎡

6. 통영시 V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 통영시 W 전 36㎡, 끝.

